

6월세무일지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장해급여】

1. 의의

- '장해급여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종결한 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구적으로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노동력의 상실정도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2. 장해급여의 지급방법

(1)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시행령 [별표 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따라서 장해 제1급 ~ 제3급에 해당되면 수급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장해연금으로 지급되지만, 장해 제4급 ~ 제7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등급 제8급 ~ 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2) 장해연금 선급금 지급제도

-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이라 함은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장차 지급받게 될 연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 받을 수 있으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 제1급 ~ 제3급의 경우에는 연금의 최초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 받을 수 있다.

3. 수급권의 소멸

(1) 의의

- 장해연금 수급권의 소멸이란 연금을 받을 권리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그 장해등급의 장해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6월세무일지

(2) 수급권의 소멸사유

가. 수급권자의 사망

-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여명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나. 국적상실 또는 해외이주

- 내국인 수급권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여, 이 때 포기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국적상실 또는 해외이주 사유만으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 외국인의 본국 귀국

- 외국인 수급권자가 대한민국을 떠나게 되면서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며, 이 경우 역시 연금수급권 포기의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라. 장애상태의 변동

- 장애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하며, 장애급여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영구적 장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진폐증이나 기타 일부 상병의 경우 재요양 등으로 다시 장애판정을 받아 등급이 변동되어 장애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멸된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의 소멸 시기는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달의 말일에 소멸된다.

【 간병급여 】

1. 의의

- 간병급여는 산재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며,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에도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간병급여는 상시 또는 수시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간병급여의 지급원칙

-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며,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산재보험법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 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① 간병급여는 수급권자의 장애상태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② 수급권자에 대하여 실제로 간병이 행해지고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
- ③ 간병인의 수는 간병을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명으로 한다.
- ④ 간병급여는 매 월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용양을 한 경우 재용양한 날부터 재용양 종료일까지 간병급여 지급을 중단하며, 재용양기간 중에는 상병상태에 따라 간병료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요양 종결 후 장애상태에 따라 다시 간병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 ⑥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장애인 보호시설, 무료요양소, 양로원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 유족급여 】

1. 의의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이다. 산재보험법 제43조 제1항에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1,300일본)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의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2. 사망의 추정

(1) 사망추정의 의의

- 사망의 추정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 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의 특성상 인정된 제도이다.

(2) 사망추정의 사유

가. 선박·항공기의 사고

-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에 사망으로 추정한다.

나. 선박·항공기에서의 행방불명

-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로서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추락·멸실·침몰 등의 사고는 없었으나 그 근로자가 항행 중이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 해당된다.

다. 천재지변, 화재·붕괴사고 등

-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된다.

(3) 사망추정의 시기

6월세무일지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불명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추정에 의한 유족급여청구권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생존확인 신고 및 반환의무

- 사망으로 추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된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유족) 및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 생존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받은 보험급여는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 산재보험법 제43조의2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급자격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배우자인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수급자들은 연령이나 신체장애 등에 따른 소득능력을 고려하여 사망당시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 ① 부양되고 있던 남편(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 ② 부양되고 있던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 ③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④ ①내지 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남편 · 자녀 · 부모 · 손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 제3급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것
- 위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 ·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4.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

-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365일)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text{기본금액} = (\text{평균임금} \times 365\text{일}) \times 47/100$$

(2)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액의 한도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양가족의 수와 유족연금 산정액 〉

부양가족 수	산정방법	연금액
1인	기본금액 + 5% × 1인	급여기초연액의 52%
2인	기본금액 + 5% × 2인	급여기초연액의 57%
3인	기본금액 + 5% × 3인	급여기초연액의 62%
4인 이상	기본금액 + 5% × 4인	급여기초연액의 67%

【 장의비 】

1. 의의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장의비 수급권자

- 장의비는 그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관습상 장제는 사망근로자의 상속인 또는 특정의 유족이 실행되므로 유족이 장의비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제를 실행할 유족이 없는 등의 이유로 친족 또는 회사 등이 유족에 갈음하여 장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회사가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된다. 그러나 단체장, 회사장 등 은혜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의 장제를 행하고 유족이 실제적인 장제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회사측과 유족이 장제비를 분담한 경우에도 유족이 장제를 실행하였다면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은 일종의 보조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장제실행자는 유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적용

-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하되, 산정된 장의비가 최고금액 미만이거나 최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의비를 전액 지급한다.